



『 중부연회 』 2020년 종교인과세 안내문

발송자 : 중부연회
작성자 : 김종석 세무사

종교인과세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섭니다. 2020년에는 종교인과세는 가산세(과태료) 면제기간 종료 등 여러 세법상 이슈가 발생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지급명세서 가산세(과태료) 면제기간 만료

종교인과세 시행 당시 초기 오류로 인한 문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 2년 동안 종교인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면제해주었습니다. 해당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교인과세를 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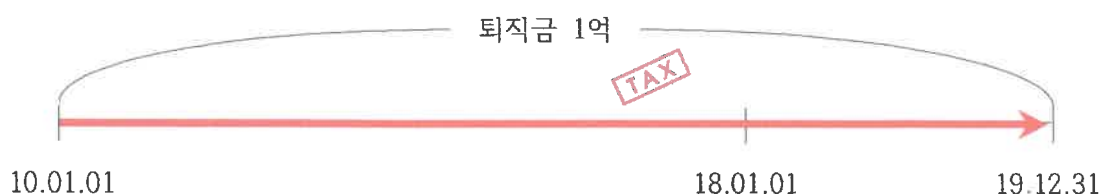
연간 종교인소득 지급액	발생 가능 가산세
30,000,000원	300,000원
50,000,000원	500,000원
100,000,000원	1,000,000원

※ 2020년부터는 작은 실수로도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월·반기 원천신고 방법으로 교회 종교인과세를 더 투명하게 신고 할 것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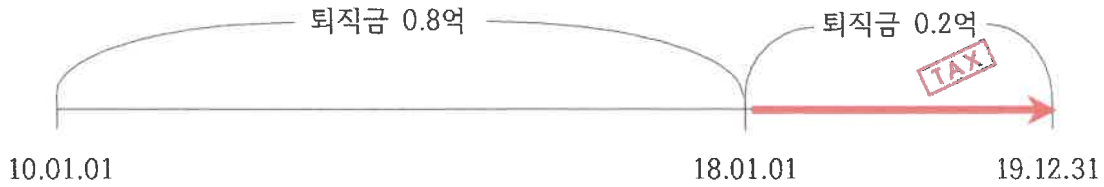
● 종교인의 퇴직소득 2018년 귀속분부터 과세 (입법 예정)

현행법상 종교인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과세 시행시기(2018.01.01)와 상충된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현행법 〕



[[개정법안]]



Ex) 2010년 1월 1일 사역을 시작한 목회자 A가 2019년 12월 31일 은퇴하며 퇴직금 1억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

- 1) 현행법상 퇴직소득세 : 5,500,000원
- 2) 개정예정 퇴직소득세 : 1,180,000원

※ **개정이 확정되기 전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개정이 확정된 후 차액을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정일은 현재 미정입니다)**

● **교회 내 정관 및 세부규칙 구비**

교회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단체로 정관 및 세부 규칙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교회는 샘플 서식을 연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오니 **연말 회의를 거쳐 꼭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정관·규칙의 종류	적용 내용	구비해야 하는 이유
정관	교회의 일반적 내용을 정의	정관은 교회법의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사례금, 급여지급규칙	목회자, 근로자의 사례금 또는 급여의 내용을 정의	① 사례금 또는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② 세법에서는 자가운전수당 등이 규칙 없이 지급된 경우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활동비용 지급규칙	목회자의 교회활동비용의 내용을 정의 (Ex.목회활동비, 심방비 등)	① 교회활동비용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② 세법에서는 교회활동비용이 규칙 없이 지급된 경우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지급규칙	종교인, 근로자의 퇴직금의 내용을 정의	①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② 종교인, 근로자의 퇴직 시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 **교회가 알아야 하는 연간 주요 세무일정**

월	신고·보고 의무 기한 및 내용		의무이행 대상
2월	2월 10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2월 28일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근로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
3월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 근로자, 사업자, 퇴직자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한 경우
	3월 31일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출연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EX. 현금, 현물)
	3월 31일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총자산가액이 5억 이상이거나 연간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경우
5월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종교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종교인, 근로자가 교회에서 받는 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종교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신청 요건을 만족한 경우
6월	6월 30일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12월	12월 31일	종교인 연말정산 신청서 제출	종교인이 월별·반기별 원천신고를 한 경우

※ 매월 10일은 원천신고·납부 기한입니다.

※ 음영표시 된 부분은 필수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로댐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종석

Tel : 032) 821 2711
 Fax : 032) 821 2712
 Mobile : 010 6239 2711
 E-mail : zou1234@naver.com